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

2023 회계연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양 산 시
(결산검사위원회)

2023 회계연도 양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수신 : 양산시장

2023 회계연도 양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20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박 일 배(양산시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최 선 호(양산시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박 동 하(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주 원 회(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최 원 석(회계사)
- 검 사 위 원 : 김 지 연(세무사)

목 차

I. 감사의견서	1
II. 결산서	5
1. 세입·세출결산	7
1) 세입·세출결산 총괄	7
2) 일반회계 결산	10
3) 특별회계 결산	12
2. 예산 집행잔액 현황	14
3.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	15
4. 예비비 지출 현황	16
5. 채권 및 채무 결산	18
6. 기금현황	19
7. 재무제표	20
8. 성과보고서	22
9. 성인지결산	23
III. 결산서 부표	24
1.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26
2. 보조금 집행 현황	28
3.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	29
4.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30
5. 공유재산 현황	31
6. 물품 현황	32
IV. 결산검사 결과	33
1. 결산 총괄	35
2. 지적 및 권고사항	40
3. 수범사례	58

I . 검 사 의 견 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양산시장 귀하

2024년 4월 2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로부터 양산시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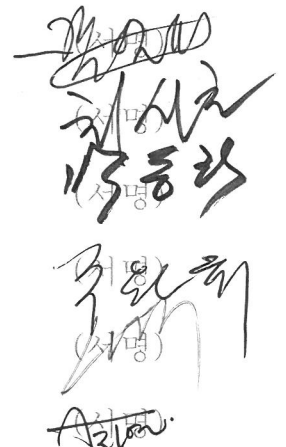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양산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양산시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양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양 산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대표위원	박 일 배
검사위원	최 선 호
검사위원	박 동 하
검사위원	주 원 희
검사위원	최 원 석
검사위원	김 지 연



Handwritten signatures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member and the six auditors, with their names written below them.

II. 결 산 서

1. 세입·세출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
합 계		1,958,243,410,823	1,982,505,484,063	1,601,173,489,930	381,331,994,133
일 반 회 계		1,777,747,798,543	1,805,859,564,048	1,506,297,728,799	299,561,835,249
특 별 회 계		180,495,612,280	176,645,920,015	94,875,761,131	81,770,158,884
	공기업특별회계	154,757,259,670	151,629,996,124	75,148,137,095	76,481,859,029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85,796,938,030	84,897,268,714	46,831,967,385	38,065,301,329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68,960,321,640	66,732,727,410	28,316,169,710	38,416,557,700
	기타특별회계	25,738,352,610	25,015,923,891	19,727,624,036	5,288,299,85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99,168,000	5,592,874,450	5,531,031,040	61,843,410
	수질개선특별회계	5,274,068,610	5,315,754,574	4,912,276,210	403,478,364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2,541,000	192,707,897	192,105,500	602,397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7,367,804,000	7,434,459,443	3,748,301,286	3,686,158,157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5,213,277,000	3,885,143,840	3,304,583,180	580,560,66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1,045,528,000	1,306,776,830	1,027,006,250	279,770,58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45,966,000	1,288,206,857	1,012,320,570	275,886,287

나. 세입

(단위: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958,243,410,823	2,045,566,890,819	1,982,505,484,063	7,115,723,790	55,945,682,966
일 반 회 계	1,777,747,798,543	1,859,169,818,188	1,805,859,564,048	6,918,338,830	46,391,915,310
공기업특별회계	154,757,259,670	159,354,512,045	151,629,996,124	197,384,960	7,527,130,961
기타 특별회계	25,738,352,610	27,042,560,586	25,015,923,891		2,026,636,695

다. 세출

(단위: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1,958,243,410,823	1,601,173,489,930	227,490,764,174	12,740,065,328	116,839,091,391
일 반 회 계	1,777,747,798,543	1,506,297,728,799	213,743,107,294	12,665,568,918	45,041,393,532
공기업특별회계	154,757,259,670	75,148,137,095	13,747,656,880		65,861,465,695
기타 특별회계	25,738,352,610	19,727,624,036		74,496,410	5,936,232,164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라. 세계잉여금

(단위:원)

구 분	계	다 음 연 도 이 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381,331,994,133	134,757,550,394 (807,169,000)	32,892,590,862	59,033,453,918	12,604,631,023	142,043,767,936
일 반 회 계	299,561,835,249	121,259,004,514 (807,169,000)	32,643,479,862	59,033,453,918	12,530,134,613	74,095,762,342
특 별 회 계	81,770,158,884	13,498,545,880	249,111,000		74,496,410	67,948,005,594
공기업특별회계	76,481,859,029	13,498,545,880	249,111,000			62,734,202,149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8,065,301,329	12,475,495,880	249,111,000			25,340,694,449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8,416,557,700	1,023,050,000				37,393,507,700
기타특별회계	5,288,299,855				74,496,410	5,213,803,44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843,410					61,843,410
수질개선 특별회계	403,478,364				51,675,880	351,802,484
담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602,397					602,397
양산일반산업단 지관리특별회계	3,686,158,157				22,709,374	3,663,448,783
어곡일반산업단 지관리특별회계	580,560,660				111,156	580,449,504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0
주민소득지원 자금특별회계	279,770,580					279,770,58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5,886,287					275,886,287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 미포함

2)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

(단위:원)

과 목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768,747,798,543	1,859,169,818,188	1,805,859,564,048	6,918,338,830	46,391,915,310
지방세수입		317,300,000,000	344,823,753,240	313,424,730,710	4,828,214,260	26,570,808,270
	지난년도수입	6,000,000,000	24,007,644,860	4,318,405,560	4,695,759,490	14,993,479,810
	보통세	311,300,000,000	320,816,108,380	309,106,325,150	132,454,770	11,577,328,460
세외수입		54,448,192,000	83,189,777,144	61,368,584,839	2,090,124,570	19,731,067,735
	경상적세외수입	25,180,965,000	25,065,640,923	24,840,125,328	6,363,960	219,151,635
	임시적세외수입	24,754,739,000	49,838,733,031	31,370,432,101	2,065,842,600	16,402,458,3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12,488,000	8,285,403,190	5,158,027,410	17,918,010	3,109,457,770
지방교부세		324,018,387,000	349,631,165,750	349,631,165,750		
	지방교부세	324,018,387,000	349,631,165,750	349,631,165,750		
조정교부금등		85,014,000,000	85,876,900,000	85,876,900,000		
	시·군조정교부금등	85,014,000,000	85,876,900,000	85,876,900,000		
보조금		668,241,231,000	667,153,121,940	667,153,121,940		
	국고보조금등	538,742,315,000	537,989,069,750	537,989,069,750		
	시·도비보조금등	129,498,916,000	129,164,052,190	129,164,052,190		
지방채		1,000,000,000	11,370,000,000	11,370,000,000		
국내차입금		1,000,000,000	11,370,000,000	11,370,0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8,725,988,543	317,125,100,114	317,035,060,809		90,039,305
	보전수입등	299,050,673,543	296,263,042,682	296,194,343,907		68,698,775
	내부거래	19,675,315,000	20,862,057,432	20,840,716,902		21,340,530

나. 세출

(1) 기능별 분류

(단위:원)

과 목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합 계	1,777,747,798,543	1,506,297,728,799	213,743,107,294	12,665,568,918	45,041,393,532
일반공공행정	121,179,682,330	118,351,668,436	610,495,340	12,570,178	2,204,948,376
공공질서및안전	15,547,229,910	9,828,983,893	5,530,176,328	1,837,681	186,232,008
교육	22,811,838,500	20,210,341,316	2,160,225,000	46,356,715	394,915,469
문화및관광	123,398,719,170	74,772,659,960	45,949,483,190	395,107,330	2,281,468,690
환경	158,664,966,031	126,747,972,046	22,927,207,741	5,483,136,081	3,506,650,163
사회복지	561,990,687,710	519,389,555,875	33,439,781,950	4,880,282,335	4,281,067,550
보건	24,126,769,000	21,699,449,378	769,559,920	851,487,253	806,272,449
농림해양수산	77,662,597,060	66,857,290,481	8,113,494,195	605,834,064	2,085,978,320
산업·중소기업	56,315,311,190	45,023,998,893	9,089,081,330	151,708,957	2,050,522,010
교통및물류	343,299,877,504	282,048,521,257	48,707,184,280	143,375,342	12,400,796,625
국토및지역개발	119,302,358,138	77,526,499,491	36,446,418,020	62,212,749	5,267,227,878
예비비	800,383,000				800,383,000
기타	152,647,379,000	143,840,787,773		31,660,233	8,774,930,994

(2) 성질별 분류

(단위:원)

과 목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합 계	1,777,747,798,543	1,506,297,728,799	213,743,107,294	12,665,568,918	45,041,393,532
인건비	112,813,186,000	108,940,137,100	15,466,260	402,877,794	3,454,704,846
물건비	67,185,327,090	60,988,212,273	1,684,429,460	119,620,737	4,393,064,620
경상이전	758,161,694,507	738,261,424,310	840,820,000	6,487,069,031	12,572,381,166
자본지출	748,939,054,946	513,007,206,733	211,202,391,574	5,656,001,356	19,073,455,283
융자및출자	79,800,000	79,800,000			
내부거래	59,331,084,000	59,331,081,950			2,050
예비비및기타	31,237,652,000	25,689,866,433			5,547,785,567

3)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

(단위: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A-B-C)
합 계	180,495,612,280	186,397,072,631	176,645,920,015	197,384,960	9,553,767,656
공기업특별회계	154,757,259,670	159,354,512,045	151,629,996,124	197,384,960	7,527,130,961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5,796,938,030	87,476,252,036	84,897,268,714	119,111,750	2,459,871,572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8,960,321,640	71,878,260,009	66,732,727,410	78,273,210	5,067,259,389
기타특별회계	25,738,352,610	27,042,560,586	25,015,923,891		2,026,636,69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99,168,000	7,526,487,295	5,592,874,450		1,933,612,845
수질개선 특별회계	5,274,068,610	5,315,754,574	5,315,754,574		
댐주변지역지원사 업특별회계	192,541,000	192,707,897	192,707,897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7,367,804,000	7,439,619,213	7,434,459,443		5,159,770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5,213,277,000	3,888,988,070	3,885,143,840		3,844,230
폐기물처리시설사 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1,045,528,000	1,306,776,830	1,306,776,83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045,966,000	1,372,226,707	1,288,206,857		84,019,850

나. 세출

(단위: 원)

회 계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합 계		180,495,612,280	94,875,761,131	13,747,656,880	74,496,410	71,797,697,859
공기업특별회계		154,757,259,670	75,148,137,095	13,747,656,880		65,861,465,695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5,796,938,030	46,831,967,385	12,724,606,880		26,240,363,765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8,960,321,640	28,316,169,710	1,023,050,000		39,621,101,930
기타 특별회계		25,738,352,610	19,727,624,036	0	74,496,410	5,936,232,16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99,168,000	5,531,031,040			68,136,960
	수질개선특별회계	5,274,068,610	4,912,276,210		51,675,880	310,116,520
	댐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92,541,000	192,105,500			435,500
	양산일반산업단지관 리특별회계	7,367,804,000	3,748,301,286		22,709,374	3,596,793,340
	어곡일반산업단지관 리특별회계	5,213,277,000	3,304,583,180		111,156	1,908,582,664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0
	주민소득지원자금특 별회계	1,045,528,000	1,027,006,250			18,521,75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045,966,000	1,012,320,570			33,645,430

2. 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원)

회계별	집행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결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116,839,091,391	6,051,408,006		4,791,838,340	268,554,890	2,311,629,000	103,415,661,155
일반회계	45,041,393,532	6,021,547,126		4,791,838,340	268,554,890	800,383,000	33,159,070,176
공기업 특별회계	65,861,465,695					1,200,000,000	64,661,465,695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6,240,363,765					650,000,000	25,590,363,765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9,621,101,930					550,000,000	39,071,101,930
기타 특별회계	5,936,232,164	29,860,880				311,246,000	5,595,125,2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136,960						68,136,960
수질개선평특별회계	310,116,520	530,000				305,663,000	3,923,520
민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35,500					150,000	285,500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3,596,793,340	23,164,146					3,573,629,194
아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1,908,582,664	166,734					1,908,415,93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18,521,750						18,521,75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3,645,430	6,000,000				5,433,000	22,212,430

3.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471	171,304,863,000	
이 용			
전 용	8	146,234,000	일반회계
이 체	463	171,158,629,000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이용, 전용 내역 없음

4.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원)

조 직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예비비지출 사 유
	세부	통 계 목					
	합 계(23건)		823,375,000	694,274,370	61,460,000	67,640,630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운영관리	시설비	22,000,000		19,500,000	2,500,000	건물의 노후와 및 안전문제에 따른 철거 필요
노인장애인과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1,200,000	1,2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1,200,000	1,2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200,000	1,2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양로시설 운영 지원(전환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95,700,000	95,7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800,000	1,2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조 직	세부	통 계 목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수어통역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800,000	1,8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8,800,000	79,454,790		9,345,21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행정과	튀르키예 지진발생 피해지원	국외경상이전	65,000,000	65,000,000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및 인도적 지원
정보통계과	행정방송시설 관리	시설비	70,000,000	56,843,000		13,157,000	정보통계과-1700(2023.1.27.)호 관련 양산타워 철탑 구조물 철거 및 개축에 따른 방송설비 신설을 위한 예비비 편성
미래산업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회복지장적 수혜금	260,000,000	225,000,000		35,0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미래산업과	상록면 석계리 산39-1번지	연구용역비	110,000,000	68,040,000	41,960,000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 원인규명 및 복구계획 수립
응답출장소 문화복지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600,000	600,000			한파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
동물보호과	꿀벌 사육기반 인정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9,275,000	72,782,500		6,492,500	동물보호과-11425(2023.4.12.)호와 관련하여 꿀벌 사육기반 회생을 위하여 신속한 공공회복 지원
산림과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00	19,454,080		545,920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산불예방 홍보 방송장비 추가 구입

5.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권

(단위:원)

회계별	채권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0,497,881,625	2,120,072,250	2,288,062,050	10,329,891,825
일반회계	계	4,169,230,910	115,831,200	233,426,100	4,051,636,010
	보증금채권	495,950,000			495,950,000
	융자금채권	3,673,280,910	115,831,200	233,426,100	3,555,686,010
특별회계	계	6,328,650,715	2,004,241,050	2,054,635,950	6,278,255,81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타채권	1,823,980,715	105,750,610	37,274,510	1,892,456,815
주민소득지원자 금 특별회계	융자금채권	4,504,670,000	1,898,490,440	2,017,361,440	4,385,799,000

2) 채무

(단위:원)

회계별	채무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3,807,000,000	11,370,000,000		35,177,000,000
일반회계	계	23,807,000,000	11,370,000,000		35,177,000,000
	지방채증권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3,807,000,000	11,370,000,000		35,177,000,000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특별회계					
기금					

6. 기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2022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2023년말 현재액
계(13중)	108,774,768,713	52,227,365,232	13,550,283,257	147,451,850,6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225,146,740	41,486,048,460	5,269,530,950	121,441,664,2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4,327,520	39,742,760		6,344,070,280
자활기금	2,068,572,604	75,094,751	5,881,000	2,137,786,355
지역문화진흥기금	1,659,265,693	13,993,019	250,894,750	1,422,363,962
체육기금	1,975,245,305	52,944,550	2,005,461,000	22,728,85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54,674,825	1,360,219,861	1,119,184,857	1,395,709,829
전통시장 주치장 관리기금	60,630,802	12,233,895		72,864,697
중소기업육성기금	1,522,921,515	5,074,699,950	4,262,014,360	2,335,607,105
투자유치진흥기금	756,868,270	276,630,400	499,520	1,032,999,150
식품진흥기금	132,541,790	184,458,140	159,562,760	157,437,170
재난관리기금	7,321,776,649	3,355,341,540	463,914,210	10,213,203,979
육외광고발전기금	290,253,070	55,952,596	13,339,850	332,865,816
고향사랑기금		235,710,080		235,710,080
남북교류협력기금	302,543,930	4,295,230		306,839,160

7. 재무제표

1)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6,299,296	6,653,099	353,803	5.6%
I .	유동자산	493,883	560,151	66,268	13.4%
II .	투자자산	8,012	7,723	-289	-3.6%
III .	일반유형자산	227,545	227,575	30	0.0%
IV .	주민편의시설	1,127,169	1,201,344	74,175	6.6%
V .	사회기반시설	4,435,601	4,649,212	213,611	4.8%
VI .	기타비유동자산	7,086	7,094	8	0.1%
부 채		118,205	112,301	-5,904	-5.0%
I .	유동부채	26,685	15,261	-11,424	-42.8%
II .	장기차입부채	23,807	35,177	11,370	
III .	기타비유동부채	67,713	61,863	-5,850	-8.6%
순 자 산		6,181,091	6,540,798	359,707	5.8%
I .	고정순자산	5,715,974	5,997,053	281,079	4.9%
II .	특정순자산	23,916	28,757	4,841	20.2%
III .	일반순자산	441,201	514,988	73,787	16.7%

2)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	사업순원가	479,767	339,576	-140,191	-29.2%
	(가-나)				
가 .	사업총원가	1,056,469	1,063,765	7,296	0.7%
나 .	사업수익	576,702	724,189	147,487	25.6%
II .	관리운영비	112,390	118,023	5,633	5.0%
III .	비배분비용	67,815	63,921	-3,894	-5.7%
IV .	비배분수익	47,371	38,087	-9,284	-19.6%
V .	재정운영순원가	612,601	483,432	-129,169	-21.1%
	(I + II + III - IV)			0	
VI .	일반수익	1,009,780	810,675	-199,105	-19.7%
VII .	재정운영결과	-397,179	-327,243	69,936	-17.6%
	(V - VI)				

3) 순자산변동표

당해연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당해연도(2023년)					
	일반회계	기 타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내부거래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I. 기초순자산	5,917,094,921,852	42,143,349,400	26,076,877,717	628,478,688,539	-432,702,423,754	6,181,091,413,754
II. 재정운영결과	-338,250,972,643	147,550,066	-4,733,702,607	15,594,516,238	0	-327,242,608,946
III. 순자산의 증가	8,883,362,909	445,436,070	249,990,000	39,512,455,008	-6,279,270,708	42,811,973,279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1,270,589,760					1,270,589,760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3,440,106,630					3,440,106,630
기타순자산의증가	4,172,666,519	445,436,070	249,990,000	39,512,455,008	-6,279,270,708	38,101,276,889
IV. 순자산의 감소	9,510,305,657	309,036,631	529,144,677	-	-	10,348,486,965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206,225					206,225
기타순자산의감소	9,510,099,432	309,036,631	529,144,677			10,348,280,740
V. 기말순자산(I+III-IV)	6,254,718,951,747	42,132,198,773	30,531,425,647	652,396,627,309	-438,981,694,462	6,540,797,509,014

직전연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직전연도(2021년)					
	일반회계	기 타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내부거래	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I. 기초순자산	5,503,902,688,153	42,817,049,947	24,049,056,161	608,777,313,384	-422,750,469,924	5,756,795,637,721
II. 재정운영결과	-412,300,102,493	700,742,985	-1,726,751,051	16,146,725,079	-	-397,179,385,480
III. 순자산의 증가	3,311,801,610	171,778,610	333,320,049	35,848,100,234	-9,951,953,830	29,713,046,673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1,383,000,200					1,383,000,200
기타순자산의증가	1,928,801,410	171,778,610	333,320,049	35,848,100,234	-9,951,953,830	28,330,046,473
IV. 순자산의 감소	2,419,670,404	144,736,172	32,249,544			2,596,656,120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73,344,720					73,344,720
기타순자산의감소	2,346,325,684	144,736,172	32,249,544			2,523,311,400
V. 기말순자산(I+III-IV)	5,917,094,921,852	42,143,349,400	26,076,877,717	628,478,688,539	-432,702,423,754	6,181,091,413,754

8. 성과보고서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률 (B+C/A)*100
계	19	164	248	21	176	51	79.4
역점사업추진단	1	4	4	0	4	0	100.0
기획예산담당관	1	4	6	1	3	2	66.7
소통담당관	1	2	4	0	3	1	75.0
감사담당관	1	1	2	0	0	2	0.0
투자창업단	1	4	5	1	3	1	80.0
경제국	1	15	28	2	17	9	67.9
문화복지국	1	23	35	5	23	7	80.0
행정국	1	11	18	2	15	1	94.4
환경녹지국	1	17	28	1	19	8	71.4
안전도시국	1	9	14	0	13	1	92.9
개발주택국	1	20	24	2	18	4	83.3
웅상출장소	1	29	34	1	25	8	76.5
보건소	1	6	12	0	11	1	91.7
농업기술센터	1	7	14	3	8	3	78.6
상하수도사업소	1	6	9	1	7	1	88.9
차량등록사업소	1	1	3	0	3	0	100.0
시립박물관	1	3	3	1	0	2	33.3
시립도서관	1	1	2	1	1	0	100.0
의회사무국	1	1	3	0	3	0	100.0

9. 성인지결산

□ 총괄표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101	88,698,953,560	66,317,165,375	74.77 %
일반회계	100	84,540,503,560	62,255,151,015	73.64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1	4,158,450,000	4,062,014,360	97.68 %

□ 사업별 총괄표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01	88,698,953,560	66,317,165,375	74.77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45	44,576,779,850	42,856,164,415	96.14 %
	일반회계	44	40,418,329,850	38,794,150,055	95.98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1	4,158,450,000	4,062,014,360	97.68 %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49	39,902,212,710	19,581,979,890	49.07 %
	일반회계	49	39,902,212,710	19,581,979,890	49.07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0	0	0	0.00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7	4,219,961,000	3,879,021,070	91.92 %
	일반회계	7	4,219,961,000	3,879,021,070	91.92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0	0	0	0.00 %

Ⅲ. 결 산 서 부 표

1.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원)

회계별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 에 의한 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기미도래
일반 회 계	합 계	48,418,552,005	4,203,920,635	148,005,540	13,714,383,184	2,093,217,766	75,380,590		2,006,634,832	1,757,580	6,510,268,110	12,796,939,002	6,868,044,766
	소 계	46,391,915,310	3,504,443,725	23,619,730	13,443,819,604	2,093,217,766	75,380,590		2,006,634,832	1,757,580	6,510,268,110	11,864,728,607	6,868,044,766
	지방세수입	26,570,808,270	2,024,146,700	23,619,730	1,633,170,580	1,475,627,760	75,380,590			1,757,580	6,508,950,610	11,716,842,860	3,111,311,860
	세외수입	19,731,067,735	1,480,297,025		11,781,696,907	617,590,006			2,006,634,832		1,317,500	129,399,487	3,714,131,97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039,305			28,952,117							18,486,260	42,600,928
특별 회 계	소 계	2,026,636,695	699,476,910	124,385,810	270,563,580							932,210,39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33,612,845	699,476,910	124,385,810	177,539,730							932,210,395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5,159,770			5,159,770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3,844,230			3,844,23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4,019,850			84,019,850								

공기업특별회계 미포함

2.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원)

구분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③		집행액④		이월액⑤		집행잔액⑥=③-④-⑤	
	계		계		계		계		계	
합계		872,866,839,000		873,279,443,022		775,550,215,956		82,011,548,078		15,717,679,988
	국비	468,640,506,000	국비	468,529,207,000	국비	450,134,149,172	국비	10,518,659,160	국비	7,876,398,668
당해(일반회계)	시도비	129,882,944,000	시도비	129,882,181,000	시도비	103,736,394,588	시도비	23,482,421,351	시도비	2,663,365,061
	시군구비	267,176,934,000	시군구비	267,704,964,022	시군구비	215,811,489,586	시군구비	47,745,386,567	시군구비	4,148,088,869
당해(기타특별회계)	국비	4,995,056,000	국비	4,991,692,000	국비	4,939,813,320	국비		국비	51,878,680
	시도비	5,100,000	시도비	5,100,000	시도비	5,100,000	시도비		시도비	
당해(기금)	시군구비	697,983,000	시군구비	697,983,000	시군구비	362,459,120	시군구비		시군구비	335,523,880
	시도비	410,581,000	시도비	410,581,000	시도비	263,289,300	시도비	140,081,000	시도비	7,210,700
	시군구비	1,057,735,000	시군구비	1,057,735,000	시군구비	297,520,870	시군구비	125,000,000	시군구비	635,214,130
합계	계	96,098,222,905	계	95,892,259,705	계	67,739,987,490	계	24,187,868,326	계	3,964,403,889
이월(영시) (일반회계)	국비	8,452,381,623	국비	8,452,381,623	국비	6,987,858,973	국비		국비	1,464,522,650
	시도비	12,462,408,171	시도비	12,462,408,171	시도비	9,300,641,507	시도비	2,809,107,403	시도비	352,659,261
	시군구비	40,680,705,126	시군구비	40,473,962,126	시군구비	28,152,318,793	시군구비	10,581,720,910	시군구비	1,739,922,423
이월(사고) (일반회계)	국비	2,567,435,990	국비	2,567,435,990	국비	2,479,205,187	국비		국비	88,230,803
	시도비	2,671,125,239	시도비	2,671,125,239	시도비	2,586,167,069	시도비		시도비	84,958,170
	시군구비	8,060,510,949	시군구비	8,061,290,749	시군구비	7,979,797,897	시군구비		시군구비	81,492,852
이월(계속비) (일반회계)	시도비	911,934,516	시도비	911,934,516	시도비	51,048,490	시도비	860,886,026	시도비	
	시군구비	20,075,981,681	시군구비	20,075,981,681	시군구비	10,009,827,694	시군구비	9,936,153,987	시군구비	130,000,000
이월(사고) (기금)	시도비	209,339,610	시도비	209,339,610	시도비	186,721,880	시도비		시도비	22,617,730
	시군구비	6,400,000	시군구비	6,400,000	시군구비	6,400,000	시군구비		시군구비	

3. 세입 · 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단위: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④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②+④
		계④=①-②	증가액③	지출액⑤	
합 계	소 계	3,022,017,942	36,101,476,771	37,832,727,495	1,290,767,218
	장 기	△313,459,243	50,000	0	△313,409,243
	단 기	3,335,477,185	36,101,426,771	37,832,727,495	1,604,176,461
보 증 금	소 계	112,095,365	△14,143,800	0	97,951,565
	장 기	809,783	0	0	809,783
	단 기	111,285,582	△14,143,800	0	97,141,782
보 관 금	소 계	2,909,225,427	△1,717,495,126	36,012,569,664	1,191,730,301
	장 기	△314,269,026	50,000	0	△314,219,026
	단 기	3,223,494,453	△1,717,545,126	37,730,064,790	1,505,949,327
잡종금등 기타	소 계	697,150	388,202	88,907,107	1,085,352
	장 기	0	0	0	0
	단 기	697,150	388,202	88,907,107	1,085,352

4.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총괄(일반+특별+기금) (단위: 원)

구분	건수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333	227,755,845,174	40,877,812,185	30,072,646,935	156,805,386,054	
2023년 명시이월	194	135,564,719,394	28,316,560,106	17,985,099,443	89,263,059,845	
2023년 사고이월	52	8,715,038,070	3,343,739,260	829,998,068	4,541,300,742	
2022년(명시) 사고이월	69	24,442,633,792	2,663,501,124	5,088,487,058	16,690,645,610	
계속비이월	18	59,033,453,918	6,554,011,695	6,169,062,366	46,310,379,857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건수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322	213,743,107,294	40,877,812,185	29,932,565,935	142,932,729,174	
2023년 명시이월	186	122,066,173,514	28,316,560,106	17,985,099,443	75,764,513,965	
2023년 사고이월	50	8,449,957,070	3,343,739,260	689,917,068	4,416,300,742	
2022년(명시) 사고이월	68	24,193,522,792	2,663,501,124	5,088,487,058	16,441,534,610	
계속비이월	18	59,033,453,918	6,554,011,695	6,169,062,366	46,310,379,857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건수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9	13,747,656,880	0		13,747,656,880	
2023년 명시이월	8	13,498,545,880			13,498,545,880	
2023년 사고이월	0	0				
2022년(명시) 사고이월	1	249,111,000			249,111,000	

○ 기금 (단위 : 원)

이월 명칭	건수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1	265,081,000		140,081,000	125,000,000	
2023년 사고이월	1	265,081,000		140,081,000	125,000,000	

○ 자금없는 이월(일반회계) (단위 : 원)

사업명	전체이월액(A+B)	자금없는 이월액(A)				경상이월액(B)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계	3,461,726,000	807,169,000	807,169,000		-	2,654,557,000
하북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86,690,000	286,690,000	286,690,000	-	-	-
원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75,066,000	275,066,000	275,066,000	-	-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899,970,000	245,413,000	245,413,000			2,654,557,000

6. 마칠 정황

(단위: 원)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개 수	개 가	개 수		개 가	
		개 수	개 가	개 수	개 가
1,371	17,331,837,153	63	631,381,853	14	59,230,650
				1,420	17,903,988,356

IV. 결산검사 결과

1. 결산 총괄

□ 전년대비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 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계	2023	1,958,243	1,982,505	1,601,173	381,332	134,758	32,893	59,033	12,605	142,044
	2022	1,980,108	1,976,152	1,617,717	358,435	130,477	30,964	36,255	23,450	137,289
일반 회계	2023	1,777,748	1,805,859	1,506,298	299,562	121,259	32,644	59,033	12,530	74,096
	2022	1,827,402	1,827,459	1,535,485	291,974	128,218	30,628	36,255	23,379	73,494
공기업 특별 회계	2023	154,757	151,630	75,148	76,482	13,499	249	0	0	62,734
	2022	124,793	119,915	60,572	59,343	2,050	336	0	0	56,957
기타 특별 회계	2023	25,738	25,016	19,727	5,288	0	0	0	74	5,214
	2022	27,913	28,777	21,660	7,117	209	0	0	70	6,838

- 2023 회계연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958,243백만원입니다.
세입 부문은 전년대비 0.32% 증가한 1,982,50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부문은 전년대비 1% 감소한 1,601,17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381,33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34,758백만원, 사고이월 32,893백만원, 계속비이월 59,033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2,60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42,044백만원입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비롯하여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아래의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결산 내용을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본예산 (A)	추경예산(B)		최종예산 (C=A+B)	다음년도이월액(D)		예산현액 (E=C+D)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3년	1,484,259	94,176	5.9%	1,578,435	199,313	11.21	1,777,748
2022년	1,383,368	269,822	14.7%	1,653,190	174,212	9.5%	1,827,402
2021년	1,217,922	277,230	16.9%	1,495,152	147,047	8.9%	1,639,199
2020년	1,126,207	161,951	11.2%	1,288,158	156,577	10.8%	1,444,735
2019년	1,008,854	89,043	7.1%	1,097,897	151,229	12.1%	1,249,127

※ 일반회계 기준 / 비율 : 예산현액 대비

- 예산현액 대비 추경예산 비중이 2022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반면, 다음년도 이월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경예산 비중이 감소한 부분은 세입·세출을 추계함에 있어 누락 없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월액의 최소화와 추가경정예산 비중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최근 5년간 잉여금 추이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잉여금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금 액	전년대비			금 액	전년대비
2023년	299,562	2.6%	212,936	12,530	74,096	0.8%
2022년	291,974	15.3%	195,101	23,379	73,494	2.4%
2021년	253,125	10.8%	170,900	10,430	71,795	△3.4%
2020년	228,367	20.0%	144,044	10,017	74,306	192.9%
2019년	190,292	△4.4%	156,367	8,558	25,367	△44.0%

※ 일반회계 기준

-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금잉여금은 74,096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초과세입)와 세출예산액 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집행잔액)에 발생합니다.
- 잉여금의 발생 원인에는 세입 증가,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증가, 세출절감,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대비 잉여금이 2.6%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0.8%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상호협의를 통해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각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부서에는 요구된 세출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총괄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요하게 위배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 재정상태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자산	5,304,802	5,601,570	5,866,709	6,299,296	6,653,099
총부채	92,528	88,283	109,914	118,205	112,301
순자산	5,212,274	5,513,287	5,756,795	6,181,091	6,540,798

- **안정적인 자산 증가** : 양산시의 자산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의 세입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들어오는 지방재정의 수입 구조상 다음연도 상반기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잉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회계의 특성상 많은 자금을 쌓아놓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현금을 유지하여 계획적·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순자산 증가**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전년대비 359,707백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요인은 시설비 투자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와 재정자금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 재정운영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수익	1,113,366	1,351,861	1,452,523	1,633,853	1,572,951
총비용	917,747	1,143,524	1,228,587	1,236,674	1,245,708
운영차액	195,619	208,337	223,936	397,179	327,243

- 양산시의 총수익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총비용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차액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수입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비용지출 필요 : 총수익은 전년대비 중앙정부 및 경남도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지방교부세수익과 조정교부금 수익이 감소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전년대비 9,03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재정운영 결과는 기업에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자치행정 목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매년 보조금의 무분별한 지출 등 잘못된 재정 운영은 주민 전체의 복지를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지역개발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지적 및 권고사항

특별회계, 기금 보유자금 운용 철저

□ 현황

(단위 : 원)

부서	회계, 기금명	예치액	정기예금	일반예금	비고
농정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279,770,580	0	279,770,580	
문화관광과	지역문화기금	422,363,962	0	422,363,962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57,437,170	0	157,437,170	

□ 시 금고 예금금리 현황

(단위 : %)

예금명	금고 금리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2.9	3	3.15	3.25	3.3
일반예금	공금예금		보통예금		
	0.65		0.1		

※ 1금고(농협중앙회) 기준

□ 개선 권고사항

- 각 회계, 기금별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금이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예금 일반예금으로 구분 예치 운용을 잘하고 있으나 1억 이상 예치된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3개의 특별회계, 기금은 전량 일반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시 금고의 정기예금은 1개월 2.9%, 3개월 3%, 6개월 3.15%, 12개월 3.25%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정기예금은 6개월 이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예금의 경우도 공금예금은 0.65%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나 0.1%인 보통예금을 이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자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철저

□ 자금예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회계	정기예금	공금예금	보통예금
수도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3,300	14,765	424
하수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2,000	6,100	475

□ 시 금고 예금금리 현황

(단위 : %)

예금명	금고 금리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2.85	2.9	3.0	3.15	3.25
일반예금	공금예금		보통예금		
	0.7		0.5		

※ 2금고(BNK 경남은행) 기준

□ 개선 권고사항

-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금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회계 모두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예금, 공금예금, 보통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자율이 0.7%인 공금예금에 예치한 자금이 상기 표와 같이 높은 실정입니다. 정기예금에 1개월 예치 시는 이자율이 2.85%이나 공금예금에 예치할 경우 0.7%로써 정기예금이 2.15%의 이자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상수도공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60억원의 자금을 1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으며 하수도공기업의 경우도 30억원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에서는 「양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회계 규칙」 제27조,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액 초과 지출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예 산 편 성			
	당 초	1회 추가경정	2회 추가경정	3회 추가경정
상북상삼도시계획도(소1-5호선)개설	600,000,000	0	530,000,000	481,773,000
하북지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개설	0	120,000,000	70,000,000	
박물관대학 운영	10,400,000	0	0	7,800,000

□ 결산 현황

(단위 : 원)

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차 액	비고
계		559,573,000	596,959,420	△37,386,420	
건설도로과	상북상삼도시계획도로(소1-5호선)개설	481,773,000	497,135,730	△15,362,730	
건설도로과	하북지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개설	70,000,000	90,639,290	△20,639,290	
시립박물관	박물관대학 운영	7,800,000	9,184,400	△1,384,400	

□ 개선 권고사항

- 상삼도시계획도로(소1-5호선)개설공사는 당초예산에 600,000천원의 사업비 편성 후 497,136천원을 지출하였고 제3회(정리) 추경 시 481,773천원으로 예산을 과다 삭감하여 15,363천원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북지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개설공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20,000천원 사업비 편성 후 90,639천원을 지출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 시 70,000천원으로 예산을 과다 삭감하여 20,639천원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박물관 대학운영 사업은 당초예산에 10,400천원의 사무관리비 편성 후 9,184천원을 지출하였고 제3회(정리) 추경 시 7,800천원으로 예산을 과다 삭감하여 1,384천원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 3개 사업은 제2회 추경과 제3회(정리) 추경 시 집행잔액에 대한 추산 착오로 인해 원인행위 금액보다 예산을 과다 삭감하여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철저한 업무 숙지를 통해 반복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월사업 예산운용 철저

□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기후환경과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01-02)	25,736	0	25,736
건설도로과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 사업	시설비(401-01)	420,000	0	420,000
건설도로과	동면석산도시계획도로 (소3-32호선) 개설	시설비(401-01)	103,196	0	103,196
건설도로과	동면석산도시계획도로 (소3-121호선) 개설	시설비(401-01)	94,290	0	94,290
건설도로과	덕계도시계획도로 (소2-203호선) 개설	시설비(401-01)	7,000	0	7,000

※ 일반회계 기준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된 예산 중 전액 불용사업은 5건이며 원인은 보상협의 불가,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그 규모나 사업비의 성격상 예산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는 물론 총괄부서에서도 관리감독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그외수입) 세입 누락 과다 발생

□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실제수납액	차 액	비고
계	62	5,284,246,000	15,733,979,844	10,449,734,844	
예산편성	43(70%)	5,284,245,000	15,429,068,965	10,144,823,965	
미 편 성	19(30%)	0	304,910,879	304,910,879	

- 2023년도 회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경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을 10,449,734천원을 수입 예산에 미반영하여 세출예산에도 편성되지 아니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개선 권고사항

-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목의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부서가 19개 부서 304,910천원이고 수입 예산을 편성한 43개 부서도 예산을 초과한 금액이 10,144,823천원으로 합계 10,449,734천원이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재정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는데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과목 착오로 예산 미활용

□ 세입조치 현황

(단위 : 원)

세 입 내 용	구 분	세 입 과 목				
		장	관	항	목	금 액
강서·물금배수분구	예 산 서	세외수입	임 시 적 세 외수입	보 조 금 반환수입	위 탁 비 반환수입	5,307.836,583
도시침수예방사업	실제수납	세외수입	임 시 적 세 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5,307,836,583

□ 결산 현황

○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단위 : 원)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 고
5,307,836,000	0	0	

○ 임시적세외수입, 기탁수입, 그 외수입

(단위 : 원)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 고
233,141,000	5,540,977,583	5,540,977,583	

○ 위탁비반환 수입 5,307,836,583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수납은 그 외 수입으로 착오 징수 결정하여 5,307,836,583원이 세입예산에 미반영되어 2023년 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 개선 권고사항

○ 세입과목 착오로 인해 53억원의 재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2023년 한해 동안 사장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숙지가 필요합니다.

세입 환급금 증가

□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타
		건수	금액						
2023	7,841,213	411	502,821	747,458	232,180	481,872	3,566,744	6,678	2,303,460
2022	6,619,672	784	178,440	198,713	520,909	438,281	1,539,550	23,397	3,720,382
2021	4,955,776	97	26,484	349,404	503,766	461,145	1,552,495	280,376	1,782,106

※ 일반회계 기준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 환급금 발생은 국세경정, 법령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되는 건수가 2022년 대비 373건 감소하여 고무적이나 아직까지 많은 실정입니다.
- 지속적으로 환급금 발생 원인을 분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5년 이후는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안내문 개별발송, 직접통화 등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세입 환급금 발생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증가

□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2023	4,409,146	2,810,015	1,590,244	36.07
2022	3,856,191	2,447,245	1,406,719	36.48
2021	3,790,553	2,413,421	1,377,132	36.33

□ 권고사항

- 상기 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과태료 미수납률을 확인한 결과 2021년 36.3%, 2022년 36.5%, 2023년 36.1%로 매년 36% 이상의 미납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2023년은 전년 대비 과태료 미수납률이 일부 감소하여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과다합니다.
- 특히, 2023년의 경우 차량 관련 과태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관련 부서는 과태료 납부율 제고를 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강구

□ 정의 및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민주성, 책임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공모 현황 및 예산 편성

(단위: 천원, 건)

연도	공모사업 유형	공모 건수	소관부서검토 선정 건수	최종선정 건수	편성 예산액
2023	도	3	0	0	0
	시	112	35	20	893,950
2022	도	7	5	1	50,000
	시	76	23	23	1,086,780

□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

- 우리시는 2011년 7월 「양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2022년 5월 제3기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총30명)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공모 신청을 받은 후 검토(부서검토→분과위원회 검토→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시 공모건수는 2022년 76건 대비 36건 증가한 112건이나 2023년 도 공모건수는 3건으로 2022년 7건 대비 4건이 부족하며 또한 소관부서검토, 최종선정 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검토 시, 1차 부서 검토에서부터 최종 선정까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의 확대 실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되고 특히 경남도 공모사업이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 자금 미처리 현황

(단위: 건, 원)

부서명	현금종류	발생연도	건수	금액	비고
농정과	보관금	2016~2023	52	7,715,267	
시립박물관	보관금	2016~2021	8	1,459,170	

□ 개선 권고사항

-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산과 관계없이 법령 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일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하며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됩니다. 상기 표의 2개 부서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보관금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 보존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 될 경우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공고 하여야 합니다.
- 상기 표와 같이 반환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로 세입 조치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반환기간이 미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환 조치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절 정산 최소화 방안 강구

□ 타절정산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계약금액	타절금액	비고
도로과	덕계도시계획도로(소2-A호선) 도시계획 관리 결정용역	23,547	21,726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북부제1공영주차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86,238	48,474	

□ 타절정산 사유

- 덕계도시계획도로(소2-A호선)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 2022. 4.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착수
 - 2022. 11.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입안 요청
 - 2023. 6.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취소
- ※ 하천 기본계획(2008) 재수립 등 향후 주변여건 변화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치
- 북부 제1공영주차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2020. 4.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6. : 용역 중지
 - 2022. 4. : 북부지구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용역 착수
 - 2022. 10. : 국토부 구조조정 결과 알림(사업 삭제)
- ※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사항 구조조정으로 주민 반대로 추진 불가한 세부사업 삭제
 - 2023. 10. :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경상남도→시)

□ 개선 권고사항

- 덕계 도시계획도로(소2-A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2008년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타절되었으며, 북부 제1공영주차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주차장 인근 주민들의 사업시행 반대로 타절 정산하였습니다.
- 사업추진 시 주변여건, 민원 발생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 후 추진하여 타절 정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기금 잔액 처리 부적절

□ 내부거래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실제수납액	차 액	비 고
기금전입금	1,895,461,000	2,021,447,677	125,986,677	

- 예산의 내부거래는 회계간 재원을 서로 융통하는 것으로 전입금과 전출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기금 내부거래 전입금이 예산액보다 125,986,677원 많이 결산 되었습니다.

□ 개선 권고사항

- 기금 잔액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 폐 지 일	2022년말 기금잔액	2023년 증가액	2023년 현재 (2023. 6. 1현재)	비 고
장애인복지기금	2022.12.31	122,027,347	3,959,330	125,986,677	

-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2년 12월 31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잔액 125,986,677원을 2023년도에 처리하면서 장애인복지기금 잔액을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부거래로 처리하여 결산서 내부거래 전입금과 전출금이 서로 차액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수입 정리 부적절

□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 입 금			전 출 금		
	예산액	실수령액	차 액	예산액	전출금액	차 액
공사·공단	16,588,444	17,607,859	1,019,415	0	0	0

- 예산의 내부거래는 회계 간 재원을 서로 융통하는 것으로 전입금과 전출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수입금을 세외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시설공단의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부적절하게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 개선 권고사항

- 공단의 각종시설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대금이 공단 통장에 입금이 되며 매일 징수과로 수입금을 송부하고 징수과에서 내부거래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수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회계 간 재원을 서로 융통하는 것으로 전입금과 전출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에는 전출금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17,607천원을 세입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설관리 공단의 각종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금 처리가 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편성한도 준수

□ 현황

- 자치단체의 일반 예비비는 예비비 편성 한도(당초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설정(지방재정법 제43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비비가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보다 초과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당초예산 대비 비율 (당초예산: 1,484,258,667천 원)

(단위: 원, %)

구분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1,628,400	2.80	73,987,111	4.98	19,497,250	1.31	1,623,758	0.11
일반	10,151,046	0.68	15,000,000	1.01	8,000,000	0.54	1,100,000	0.07
재해재난	28,772,375	1.94	56,282,132	3.79	11,109,850	0.75	523,758	0.04
내부유보	2,704,979	0.18	2,704,979	0.18	387,400	0.03	0	0.00

□ 시정 및 개선사항

-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을 기준합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비비가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대비 1.01%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48억원의 재원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

□ 최근 5년간 잉여금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2023	299,562	2.6%	212,935	12,530	74,096	0.8%
2022	291,974	15.3%	195,101	23,379	73,494	2.4%
2021	253,125	10.8%	170,900	10,430	71,795	△3.4%
2020	228,367	20.0%	144,044	10,017	74,306	192.9%
2019	190,292	△4.4%	156,367	8,558	25,367	△44.0%

※ 일반회계 기준

□ 권고사항

-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74,096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는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초과세입)와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집행잔액)에 발생합니다.
- 2023년 회계연도는 전년대비 잉여금은 2.6%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0.8% 증가했으며 잉여금 발생 주된 원인으로는 첫 번째 세입의 증가로 세입 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두 번째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으로 불용액 원인은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산출기초 단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해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월금 증가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입부서와 예산부서는 긴밀한 상호협의를 통해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부서는 세출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추계 및 업무의 정확성 필요

□ 현황

(단위 : 원)

세외수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차액
일반회계	수수료 수입	4,590,342,000	3,706,645,000	883,697,000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임시적세외 수입	1,212,195,000	2,819,970	1,209,375,03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883,697,000원입니다.
이 중, 수수료수입의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경우 징수결정액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처리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1,209,375,030원입니다.
차액의 가장 큰 원인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의 기부금 예산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하기 전 예산에 반영하였고 추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시정 및 개선사항

- 지방세입의 예측은 건정재정 도모의 근간이 되고,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 단계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직결됩니다.
- 향후, 세수추계 및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최대한 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보류액 최소화 및 징수 노력

□ 현황

[지방세]

500백만원 미만		500백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6,067	11,259	102	135	71	88	-	-	6	6	-	-	1	2

[세외수입]

500백만원 미만		500백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9,972	14,383	6	21	14	16	6	7	1	1	-	-	-	-

□ 시정 및 개선사항

-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제외한 금액을 체납액으로 구분하였을 때 정리보류액은 7,115,72천원 미수납액은 55,945,68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62,419,229천원에서 2023년 63,061,407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746,128천원(62.8%)은 정리보류액입니다.
-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소득·재산 부족과 소재 파악 불가 등으로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세입을 뜻하는 것으로 정리보류액은 세수 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에 큰 손실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저하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정리보류액 징수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 현황

(단위 : 원)

일반 회계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344,823,753,240	313,424,730,710	90.9%
	지방 세외 수입	계	83,189,777,144	61,368,584,839	73.8%
		경상적 세외수입	25,065,640,923	24,840,125,328	99.1%
		임시적 세외수입	49,838,733,031	31,370,432,101	6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85,403,190	5,158,027,410	62.3%

□ 시정 및 개선사항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통칭하며 자체재원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2021년 479억원에서 2022년 533억원, 2023년 613억원으로 전년에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32%가 지방세외수입으로 충당되어 그 비중이 작지 않으며 그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3. 수범사례

1. 공공시설조성 사업장 토사 반입·반출 비용 절감

- 양산시는 공공시설조성사업 현장 내 발생하는 토사의 반입·반출 물량에 대하여 기존 설계보다 가까운 사업장을 조사하고 반입·반출 시기 등을 협의하여 관련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으로는 종합복지허브타운 조성사업 및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사업이 있으며, 종합복지허브타운 조성사업에서는 공사 착공 시 토석정보시스템 등 확인하여 반입 가능한 가장 가까운 사토장인 에코델타시티 3단계 3공구로 사토를 반출하고 있었으나, 운반거리가 멀어 사토처리비용 과다발생 및 공기지연 등 여러 문제점 발생하여 인근 사토장을 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공문 조회 및 건설관리사업단, 시공사에 조사·검토 지시 등을 통하여 신도시정수장 등 인근 사토장을 발굴하여 토사를 반출하였습니다.
-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사업에서는 사토반출 관련 공문 조회 등 관내 토사 반출 가능 건설공사 현장 파악 및 반출시기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여 토사 반입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사토 발생 현장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 종합적으로 양산시는 공공시설조성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인근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검토 및 협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종합복지허브타운 조성사업 196,636천원,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 사업 52,233천원으로 총 248,869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 복합문화학습관(양산지혜마루) 건립공사 관급자재 도급전환·변경구입으로 예산 절감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관급자재의 경우 설계 프로세스상 본 현장에 최적화된 자재가 아니고, 내역 검토 등을 통해 동급 이상 성능의 가성비 확보 및 의장적으로 우수한 자재의 대체 구입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 2023년은 코로나19, 자재 구입 단가 상승 등 공사비 증가폭이 컸던 시기로서 선제적으로 주요 관급자재에 대한 내역 검증, 자재 구입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감리단에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감독 공무원은 공사 집행 관리자로 시공 전문가가 아니나, 이를 보조할 전문 건설사업기술인이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며,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최적의 시공을 유도하는 것”은 감독공무원의 책무 및 소임입니다.
- 기능 및 비용 측면에서 과대 설계 반영된 여지가 있는 관급자재 항목에 대하여 선제적·주도적으로 도급변경(목재데크시스템)·대체 구입(투수블록,잔디블록, 보차도 블록) 방안에 대하여 검토지시하였습니다.
- 설계도면 및 설계의도에 충실한 시공을 기본으로 하되, 감리단으로 하여금 관급자재 항목에 대한 경제성이 우선 검토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감리단의 자발적 예산 절감 방안(보차도 콘크리트블록의 투수→불투수 변경)도 보고되어 추가 예산 절감하고, 총액 기준 110,10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 고액 상습채납자 전담 추적징수TF 활동 전개

- 양산시는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해 재산 공매, 사업장 수색, 시설물 봉인, 대위등기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총 112억원(징수: 23억, 분납약속: 58억, 정리보류: 31억)의 채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 채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두는 등 법을 교묘히 이용해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 상습 채납자에게 행한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와 처분으로 인하여 강한 납세 저항 발생하였으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질서 확립 및 정의 사회를 구현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례로는
 1.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채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법인 소유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사업장을 수색하여 소유 차량 강제 견인(공매) 및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채납액 분납 약속 받았으며
 2.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상습 채납 종교법인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사업장 수색 및 미등기 불법건축물을 압류 봉인하여 해당 건축물을 통한 수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재하여 채납액에 대한 분납을 약속받았습니다.
 3. 폐업한 고액 채납법인에 대하여 대포차의 보험가입내역 조사 후 점유자에게 차량 인도를 명하고 불응 시 강제 견인 후 공매하여 채납액 강제 징수하였습니다.
 4. 그리고 경제적 능력 없는 노모 명의로 건축 행위 후 이행강제금 상습 채납한 자에 대하여 부과 대상인 미등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압류·봉인하고 채납자(노모)에게 상속 미등기된 재산을 파악하여 대위등기와 압류 등 채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4. 양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의거 당초 신고내역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환급금액 약 37억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 통상 규모가 큰 대형건축 건물에 대해 다년간에 걸쳐 투입된 매입비용은 건물 완공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완공까지 소요된 기간 때문에 토목공사 등 기초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소요가 시급하여 환급 가능한 5년 기한을 넘겨 환급을 받지 못하는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청구를 통해 전체 환급 인용되어 전번 청구시보다 환급금액이 30억원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 또한 세무사 자문 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답변받았던 부분도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일부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청구하였고 해당부분 국세청에서 전체 반영 인용하였습니다.
- 국세청 조사관과의 조사 진행 중 쟁점 논의가 있었던 때에도 각 시설 관리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상세자료 제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총 37억원의 환급금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세입처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5. 미제사건 해결로 예산 절감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양산시는 피허가자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조건(토지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발생한 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로 20년동안 이어오던 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지급한 보상금도 환수 하였습니다
-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OO골프장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조건사항(토지 기부채납)을 20년간 미이행하여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에서 토지 보상 후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피허가자에게 청구하여 3년간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로 손해배상금 148,598,680원(원금 134,904,000원 / 이자 13,693,680원)을 환수 완료하였으며 20여년 장기간 미해결 행정업무를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 사례로 활용될 것입니다.

6.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원색복원 자체작업에 따른 사업비 절감

- 양산의 대표 시설인 양산시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관람석이 준공 후 22년간 한 번도 전체 교체되지 않아 오랜 시간 자외선, 비, 바람에 노출되어 전체의 미관이 훼손되는 등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유튜브에서 플라스틱의 성질을 이용한 원색복원 영상을 보고 소량의 의자를 테스트한 결과 해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여 2023년 공단 제안제도에 신청, 선정되고 이사장 주재 책임경영회의에서 2024 주요사업으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자 재질은 열을 가하면 녹아 재성형이 가능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 불리는(HDPE)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토치 가열 후 의자 변색 여부를 확인하는 등 7개월간 사전테스트 기간을 거쳐 가스 화염방사 기법을 통해 주경기장 관람석 원색복원사업을 2024년 2월 말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신기술이 적용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원색복원으로 관람석 의자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과 내구연한 연장에 따라 약 14억원의 실질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에서 벤치마킹 시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